

1. 개정이유

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,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방한용 마스크 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(안 [별표 2], [별표 4])

나. 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(안[별표 2], [별표 5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에 분류 나목분류 1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) 가정용 미용기기	-
--------------	---

별표 2 제3호 분류 라목 “대상 없음”을 “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에 나목1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) 가정용 미용기기

별표 5 제2호 분류 라목의 품목란 “대상 없음”을 “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2]			[별표 2]		
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			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		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
분류		모델 구분	분류		모델 구분
나. 생활	1)~16) (생략)	(생략)	나. 생활	1)~16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신설>		17) 가정용 미용 기기	-
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
분류		모델 구분	분류		모델 구분
라. 섬유	대상 없음	-	라. 섬유	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	-
[별표 4]			[별표 4]		
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			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		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			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		
분류	품목		분류	품목	
나. 생활	1)~16) (생략)		나. 생활	1)~16) (현행과 같음)	

<u><신설></u>	<u>17) 가정용 미용기기</u>								
[별표 5]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) 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<table> <tr> 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 <tr> <td>라. 섬유</td><td><u>대상 없음</u></td></tr> </table>	분류	품목	라. 섬유	<u>대상 없음</u>	[별표 5]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) 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<table> <tr> <th>분류</th><th>품목</th></tr> <tr> <td>라. 섬유</td><td>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</td></tr> </table>	분류	품목	라. 섬유	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
분류	품목								
라. 섬유	<u>대상 없음</u>								
분류	품목								
라. 섬유	<u>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</u>								